

수원고등법원 2022. 6. 23 선고 2021나20121(본소), 2021나20138(반소) 판결 [인건비 및
장비사용대금 등 청구의 소 · 공사대금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2. 6. 23 선고 2021나20121(본소), 2021나20138(반소) 판결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7. 8 선고 2020가합6471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석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22. 5. 19.

판결 선고 2022. 6. 23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7. 8. 선고 2020가합6471(본소), 2020가합6488(반소)
판결

주문

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(본소)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 86,587,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(반소) 원고는 피고에게 148,955,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1)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.

나. 피고

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5쪽 하10행의 "지급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고"를 "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구두 합의 내지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고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7쪽 하4행의 "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"를 "갑 제5호증,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8쪽 하10행의 "주장하고 있는 점"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.

『, 이 사건 E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 '공법 변경 등이 발생시..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정산시 반영한다.'(제7항), '시공수량의 정산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내역을 근거로 하며, 수량증감 및 설계변경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정산수량으로 정산한다.'(제9항)라고 정하였으며, 이 사건 이천시 공사계약의 부대사항에 '공법변경에 의한 수량증감시 현장에서 수량 확정 후 최종 정산한다.'(제5항)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, 위와 같은 약정은 원래 예정된 공법이나 수량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원고에 의해 투입된 수량 및 공사금액에 관한 정산 합의를 통하여 공사대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해석되는 점,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매월 말일 무렵 원고에 의한 부분을 포함한 공사내역을 집계하는 취지의 정산서(을 제6호증의 1 내지 3)가 작성되었고, 그 중 일부에 관해서는 원고가 서명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, 이로써 최종적인 투입 수량이 확인되었다거나 최종 공사금액에 관한 변경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한 점』

○ 제1심판결 제8쪽 하10행의 "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"을 "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"으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제정

판사박광서

판사차지원

1)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'원 판결을 취소한다'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에 관하여만 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.